

의안번호	제 719 호
의결연월일	2025. 12. 2.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연월일	2025. 11. 14.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719 호
----------	---------

제출연월일 : 2025. 11. 1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주민편익시설 준공 예정(2025. 11.)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및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반입수수료 징수사항 추가
-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을 현재에 맞게 반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비율 반영 및 타 지자체 폐기물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 징수한 수수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 추가
- 주민편익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감면, 사용시간 등을 명시하고 운영사항에 따른 추가 사항 신설
- 관계규정 준용 사항에 대한 관련 조례 명칭 수정 및 추가

2. 주요내용

- 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및 관련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 기준 신설(안 제4조)
- 다.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기준 수정(안 제7조)
- 라.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비율 조정 및 근거 마련(안 제8조)
- 마. 주민편익시설 사용 및 운영사항 신설(안 제19조~안 25조)
- 바. 준용 조례 명칭 수정(안 제26조)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2025. 9. 8.(자원순환과-28190호)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 2025. 9. 5.(일자리경제과-56750호), 원안가결

다. 성별영향평가 : 2025. 9. 11.(가족지원과-30063),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기 간: 2025. 9. 9. ~ 9. 29.(21일간)

- 공고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5-2250호

- 결 과: 의견없음

마. 법제심사: 2025. 10. 2.(기획예산담당관-15473호)

- 결 과: 이상없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 2025. 10. 20.(기획예산담당관-16315호)

- 결 과: 수정가결

사. 시의회 의결 : 2025. 12월 중

아. 공포·시행 : 2025. 12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비용추계서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서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마. 법제심사 결과서

바.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편의시설”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주민편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주민편의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주민편의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만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제26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협약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예산편성”을 “매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2호 중 “10으로 한다”를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제4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주민편의시설

제1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90 감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양대3통, 양대2통,

장2통 거주자

3. 100분의 50 감면

가.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카.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하.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 가장

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너.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더.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사람

러. 단체(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서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소각, 재활용, 바이오가스화, 하수처리시설, 매립장 등의 관련 근로자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 중복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규정 하나를 적용한다.

제20조(사용시간)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주민편익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4. 그 밖에 시설 보수, 점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2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자

제2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카페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서산시가 출자한 공기업,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지원)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중전의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를 제27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시설명	시설종류	비 고
서산시 광역 자원회 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체 험형관광시설	서산시 양대 동 827, 828 번지 일대	주민편익시설	찜질방	스낵코너 및 매점 등
			사우나	
			어린이물놀이시설	
		체험형관광시설	전망대	스낵코너 및 매점 등
			슬라이드	
			실내어린이암벽	
			체험홍보실	

[별표 2]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1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시설종류	성인·청소년		어린이		비 고
		관외	관내 (서산)	관외	관내 (서산)	
주민편익 시설	찜질방	9,000	7,000	4,000	4,000	사우나 포함
	찜질복	1,000	1,000	1,000	1,000	할인적용 불가
	사우나	7,000	5,000	2,000	2,000	물놀이 이용시 어린이 무료
	어린이 물놀이시설	-	-	2,000	2,000	
체험형 관광시설	전망대	1,000		무 료		슬라이드 이용시 무료
	슬라이드	3,000		3,000		최대 5회
	실내어린이 암벽	-		무 료		
	체험홍보실	무 료		무 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정 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 2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신 설>	4. “수탁자”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신 설>	5.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6. “사용자”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7. “사용료”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 설>	8. “어린이”란 만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9.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0.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4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는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협약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제4조 · 제5조 (생 략)

제5조 · 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6조(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① (생 략)

제7조(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환경미화원의 인부 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 봉투 판매액 및 다량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생 략)

<신 설>

제8조 ~ 제17조 (생 략)

② -----
----- 매년 환
경미화원 임금협약 -----

-----.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1. (현행과 같음)

2 .

-----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현행과 같음)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
각시설로 반입되는 다른 지
역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 ~ 제18조 (현행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신 설>

<신 설>

제4장 주민편익시설

제1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시, 다
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
는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90 감면: 폐기물처
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양대
3통, 양대2통, 장2통 거주자
(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감면율을 결정한다)

3. 100분의 50 감면

가.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
우대상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
합)
- 카.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
원 조례」 제21조의2에 따
른 우수자원봉사자
- 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 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자
- 하.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
년·소녀 가장
- 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너.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
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
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
녀
- 더.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인 사람
- 러. 단체(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내 서산시가 직접 또
는 위탁하여 관리·운영하
는 소각, 재활용, 바이오가
스화, 하수처리시설, 매립
장 등의 관련 근로자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
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
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 중복할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중 사용자에게 유리
한 감면 규정 하나를 적용한다.

<신 설>

제20조(사용시간)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주민편익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
(음력 8월 15일)

4. 그 밖에 시설 보수, 점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날

<신 설>

제2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자

<신 설>

제2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카페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서산시가 출자한 공기업,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운영지원)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생략)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서산시 주민편익시설 운영 비용
- 관련조문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서산시가 출자한 공기업,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르는 비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도
6,365,244	1,303,964	1,265,320	1,265,320	1,265,320	1,265,320

⇒ 서산시 주민편익시설(체험관광시설 포함) 운영 원가산정용역 결과(예상액)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작 성 자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 유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사용료 징수금액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세 출		1,303,964	1,265,320	1,265,320	1,265,320	1,265,320	6,365,244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비용		1,303,964	1,265,320	1,265,320	1,265,320	1,265,320	6,365,244
재원 조달		1,303,964	1,265,320	1,265,320	1,265,320	1,265,320	6,365,244
자체수입	소 계	1,303,964	1,265,320	1,265,320	1,265,320	1,265,320	6,365,244
	지방세	1,148,964	1,110,320	1,110,320	1,110,320	1,110,320	5,590,244
	세외수입	155,000	155,000	155,000	155,000	155,000	775,000

※ 세외수입 산출내역

○ 사용료 징수금액

- 5,000원(이용요금 평균) X 100명/일(일평균 예상 방문객 수) X 310일/연(운영일수)
= 155,000천원

참 고

□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비용 산출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직접인건비	549,744,840	10인 인건비	
	일용인건비	0		
	소계	549,744,840		
경 비	관 리 비	인적보험료	58,361,840	
		복리후생비	22,969,600	피복, 급식비, 건강진단비
		교육훈련비	0	
		회의비	0	
		안전관리비	0	
		소모품비	0	
		통신및우편비	0	
		측정 및 검사수수료	0	
		기타경비	15,607,250	세금과공과, 도서인쇄, 여비, 소모사무용품비
	소 계	96,938,690		
시 설 운 영 비	연료비	0		
	용수비	95,179,800	설계 89.5톤/일 기준	
	유지관리비	27,645,450		
	홍보비	0		
	소 계	122,825,250		
운영원가		769,508,780		
일반관리비		46,170,520	운영원가 × 6% (기타용역)	
이윤		81,567,930	(운영원가+일반관리비)×10%	
총원가		897,247,230		
부가가치세		89,724,720	총괄원가 × 10%	
위탁비용 계		986,971,950		
전력비		266,597,920		
약품비		11,748,000		
총 위탁비용		1,265,317,870		
초기 집기류 비용		38,645,320	최초 1회	
총 계		1,303,963,190		

※ 운영비는 변동될 수 있음.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서

도약하는 서산, 실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2025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1. 일자리경제과-56679(2025. 9. 10.)호 관련입니다.
2.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의일시: 2025. 9. 5.(금) 14:00
 2. 심의안건: 총 1건
 3. 심의결과: 원안가결 1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결과
2025-3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및 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료 신설	원 안 가 결

붙임 2025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1부. 끝.

일자리경제과장수

주무관 노혜린 지역경제팀장 대결 2025. 9. 11. 일자리경제과 전결
인정배 장

협조자

시행 일자리경제과-56750 (2025. 9. 11.) 접수 자원순환과-28596 (2025. 9. 11.)

우 31982 충청남도 서산시 교운로 177. (동문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2686 팩스번호 041-660-3176 / hyerin5926@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도약하는 서산, 실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자원순환과-28280(2025. 9. 9.)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족지원과장 구

주무관	조영미	여성정책팀장	이선희	가족지원과장	2025. 9. 11.	심은주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30063	{ 2025. 9. 11. }		접수	자원순환과-28689	{ 2025. 9. 11. }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금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pcpoya@seosan.go.kr	/ 대한민국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서산043		
정책명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김진	전화번호 041-660-23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9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준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운영 사항 근거 마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영미/041-660-3021)

마. 법제심사 결과서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사결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적정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부칙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주민편익시설 준공에 따른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상위법령 내용 중 주민지원기금 비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5. 10. 1.(제1283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